## KOSHA GUIDE

C - 109 - 2017

- (6) 전기 담당자의 주차단기의 조작과 운전원의 현장 스위치의 차단은 상호 연락하여 수행되어야 하며,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잠금장치 (Lock-Out)와 꼬리표(Tag-Out)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(7) 스위치의 잠금장치 열쇠는 현장 운전원 또는 전기 담당자가 보관하고 꼬리표 에는 작업명, 작업시간, 근로자,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(8) 안전작업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작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안전작업허가서를 재승인 받아야 하며, 꼬리표 역시 재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.
- (9) 작업이 완료되면 전기 담당자는 해당 작업 근로자로부터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은 후 전원을 투입하여야 한다.

## 6.4 설비 해체 및 설치작업

중장비 등을 사용하여 기존 설비를 해체하거나 신규 설비를 설치할 때 화재·폭발, 물체에 맞음, 끼임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.

- (1) 반응기, 흡수탑, 탱크 등 설비 해체작업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(가) 설비 취급 물질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, 해체 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·준수한다.
  - (나) 설비 내부에 가연성·인화성 물질이 잔존하지 않도록 물세척 등의 방법으로 완벽히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.
  - (다) 해체 작업 시 화기 사용을 지양하고 볼트·너트 풀림용 기계·기구 또는 기계식 절단기를 사용하는 등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한다.
- (2) 석면이 함유된 설비 등을 해체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, 보온재, 개스킷 등을 사용한 면적의 합이  $15m^2$ 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 $1m^2$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 석면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나)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(특등급)·송기마스크·전동식 호흡보호구, 고글형 보호안경,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·보호장갑·보호신발을 지급하여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.